



특집

2007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2007 지방예산 · 회계의 운용방향 12

- 이 희 봉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24

- 강 성 조

2007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41

- 이 종 성

2007 지역개발정책의 기본방향 54

- 홍 기 남



2007 지방예산 · 회계의 운용방향

이 희 봉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I. 들어가는말 : 지방재정 60년사에 획을 긋는 한 해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의 개혁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재정규모가 100조원을 넘어 지방재정의 의미와 역할에 큰 변화가 요구되면서 지난 60년 지방재정사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이고 가공 할 만한 개혁들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개혁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예산부문에서의 「사업예산제도」와 회계부문에서의 「복식부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를 주축으로 재정계획, 예산편성, 예산집행, 자금관리, 자산부채,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Life Cycle을 전산화하여 한 시스템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사업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성과지향적이고 평가 가능한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 예산제도는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비용개념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산과목분류체계 또한 성과정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개혁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 상호 보완적이고 동시에 추진될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재정개혁 차원에서 2008년 회계연도

부터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budget process) - 예산준비, 예산편성, 예산집행, 성과측정·감사, 결산결과 반영 - 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공공책임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진정한 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야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개혁은 정부회계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예산개혁의 전단계로 1999년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왔고, 2007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적용하기에 이르렀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전 지자체에서 모든 재정운영의 변동내역도 복식부기방식을 추가하여 회계처리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자산·부채실사를 마치고 2006년말 현재 전 지자체 기초재정상태보고서 등 재무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지방재정활동 전 과정이 관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지난 2003년 말부터 개발되어 2006년 말 핵심분야가 개발·구축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자치단체에 확산보급되고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 단계를 앞두고 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그간의 지방재정 혁신노력을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와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2007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 시행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에 있어서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이 방식은 현금수지의 변동에 거래의 주안점이 있어 현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현금이 나가면 세출로 기록하는 것이다.

단식부기는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기에는 편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통제에 효과적인 제도이나 반면에 현금의 수지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이 표시되지 못

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출이 곤란하며,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의 부재로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또한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잡한 구조(목별조서)의 개별적 세부자료만 나열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산서를 산출하여 부정과 오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적발이 곤란하다는 점 등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의해 1998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국가는 재정경제부가, 지방은 행정자치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키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 2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시험운동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기대효과

아직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히 보여질 수는 없으나 회계학 교과서나 외국의 도입사례를 통해 기대효과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의 개혁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내역을 전 회계(일반, 특별, 공기업)를 종합하여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둘째,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정보 산출로 모든 행정 서비스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의 산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자본적 지출의 경우 감가상각을 통하여 매년 발생되는 자산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지출행위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과가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어 공무

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으로 지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2) 지역주민에 대한 효과

지역주민에게는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전체를 요약한 보고서와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됨으로써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주민들이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까지 마련된다면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는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의 핵심은 1년간 수익과 비용이라는 재정운영의 결과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자신의 살림살이의 기록을 통해 어떻게 부(富)가 변동되는가를 보여주게 된다.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던 가계부의 수준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자신의 부(富)를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록이 됨으로써 개개인의 경제 IQ를 높이는데 일정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제적 위상 제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결과로 산출되는 자료는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된 국가재정통계(GFS) 정보의 산출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 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향상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2006년도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GCI)에서 우리나라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63개국 중 42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국제경쟁력과 투명성 지수의 향상은 기본적인 회계인프라의 변혁을 통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007 운용방향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회계업무에 복식부기 방식을 적

용하는 것이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의와 수납시, 세출의 경우 검수(검사)와 지급행위시 거래를 인식하고 분개하게 된다.

세입이나 세출활동,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정적 행위를 하는 업무담당자의 회계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단,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복식부기팀 중심의 회계처리가 불가피하다.

다음으로 자산·부채·실사 자료의 평가 및 관리로서 금년 7월까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내용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를 완료해야 한다. 그 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7년도 중 자산·부채 실사결과 및 회계처리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한 결산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 새로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5가지 주요 전략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첫째, 간부공무원, 의원 등 그동안 교육이 소홀했던 대상자에 대한 전략적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단위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확산보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지원 유도를 위해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 정부회계학회 회원, 지역공인회계사, 결산검사위원 등 정부회계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지닌 지역별 인사를 대상으로 지역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별 업무처리 중 회계처리 및 전산시스템 관련 긴급한 상황 발생시 행정자치부의 비상처리지원단의 즉시 지원체제가 가동될 것이다. 비상처리 상황에 대한 대장관리를 통해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개정에 반영될 것이다.

넷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대부분의 단위 재정관리시스템간 연계 및 실시간 정보가 산출된다. 단,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자산과 공유재산물품관리제도간 일원화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교수)차원의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검증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재무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여나가는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7년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추진실태의 주기적 점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III. 사업예산제도 도입 추진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구조는 1950년대 국가형성 및 개발 년대의 기능적(품목별) 분류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 분석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상이하고 또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의 기능별 분류체계와 서로 달라 상호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하나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하여 전략적인 재원 배분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편성과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구조를 일대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은 2004년 3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예산회계제도의 개편방안이 결정되었으며, 국가재정 통합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과 연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5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근거를 지방재정법(제5조)에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와 워크숍 개최, 합동집무 등을 통해 2006년 9월에 사업예산 시범운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표 1〉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기존(품목예산제도)	개편(사업예산제도)
편 성	•예산과목 위주 편성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사업 중심으로 편성 -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동시 작성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예산서 형식	•품목별 예산서 - 비목별 편성 •목별 사업예산 내역	•성과중심 예산서 - 사업단위 편성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예산 운용	•통제위주 예산운용	•성과위주 예산운용
결 산	•단편적·품목별 결산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심사 평가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환류(Feedback)	•평가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성과평 가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
시민에 대한 효과	•품목 중심의 편제로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이와 병행하여 개편되는 사업예산 구조와 복식부기 시스템을 반영한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을 병행하여 구축해 왔다.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재정분야 정보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교육재정 상호간 재정정보의 통합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으며, 새로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가 구현되도록 개발 중에 있다.

국가는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제도(국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칭함)를 적용하여 변경된 예산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나, 지방자치단체는 1년 뒤인 2008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가는 1개의 재정주체이나 지방자치단체는 246개의 개별적인 재정주체로서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학습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한 가능한 한 국가의 예산구조와 자치단체의 예산구조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재정통제의 상호 활동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차로 2006년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시범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본 매뉴얼에 따라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품목별 예산방식으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을 사업 중심으로 시범 재편성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2007년 3월말까지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2008년도 예산안부터는 실제로 사업예산 구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서는 2006년 12월 중에 현행 품목별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고 나서 사업예산 구조로 재편된 2007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예산구조의 비교

분 류	품목예산	사업예산
기능별	장 (5장) 관 (16관)	분 야 (13개) 부 문 (51개)
조직별	항 (자율)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행정운영경비 • 재무활동
사업목적별	세 항 (자율)	
경비유형별	세세항 (대 4/소 8)	
성질별	목(8그룹, 38목) 세 목 (109세목)	편성목 (8그룹,38개) ※ 통계목 (129개)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2.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

사업예산구조는 현행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구조를 바꾸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구조로 개편한다. 이는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조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동일 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표 2〉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분류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	070		환경보호	110		산업·중소기업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	120		수송 및 교통
050		교육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 및 관광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		143	산업단지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
				093	식품의약품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표 3〉 사업예산서 체계 비교

기 존				개 편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산출기초	조직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비교증감
3332 도로관리		22,779,000		도로과						22,779,000	21,179,000	1,679,000
220 자체사업		5,766,000		광역도로건설						22,779,000	21,179,000	1,679,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5,766,000		ABC 도로		일반				5,766,000	5,166,000	666,000
		5,766,000	01 시설비			A도로사업				1,866,000	4,666,000	-2,800,000
			•A구간 1,586,000 - 시설비 1,586,000			시설비 및부대비				1,866,000	4,666,000	-2,800,000
			•B구간 2,890,000 - 설계용역 80,000 - 토지매입 2,810,000			B도로사업				2,900,000	500,000	2,400,000
			•C구간 995,000 - 토지매입 995,000			시설비 및부대비				2,900,000	500,000	2,400,000
						C도로사업				1,000,000	0	1,000,000
						시설비 및부대비				1,000,000	0	1,000,000
		271,000	02 감리비									
			•A구간 271,000									
		24,000	03 시설부대비									
			•A구간 9,000									
			•B구간 10,000									
			•C구간 5,000									

기능구조는 현행 5장 16관의 구조를 바꾸어 13분야 51부문으로 개편한다. 이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 분류를 일치시키고, 재정환경 변화 및 국제 기능분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하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 기능 분류를 구체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품목구조는 현행 8목그룹-38목-109세목의 구조를 바꾸어 8목그룹-38편성목-129통계목으로 개편한다. 통계관리 목적의 통계목은 세분화하였으며, 국가예산 과목분류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예산서체계는 현행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의 편제 형식을 사업 중심으로 편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예산서가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행정능률이 저해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중심으로 예산서를 편제하고, 여기에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 대한 각각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민들이 보다 예산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하기 위해서이다.

3. 2007 운용방향

사업예산제도는 2008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나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행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2007년도부터 운영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학습 차원에서 기 확정된 2007년도분 예산, 즉 품목별로 편성된 예산을 2007.3월말까지 새로운 사업예산체계로 시범 재편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사업예산의 시범편성은 2007년도 예산서에 계상된 사업을 구조화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구조화는 우선 각 사업부서(조직/실과)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계층화하여 분류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예산부서와 각 사업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008년도 지방예산의 편성은 2007년도분 품목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재편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2008년도 예산은 예산부서와 각 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구조화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그리고 2007. 4월 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행, 지방채발행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방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별, 계층별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IV. 맺는 말

최근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100조원시대의 도래, 국가재정의 60%가 지방에 의해서 집행되는 지방재정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이 그 규모와 중요도에 걸맞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년간 지방재정의 큰 틀을 혁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지방재정법을 전문개정하고 지방계약법·기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전문성에 기반한 4대법으로 체계화하고, 사업예산제도·복식부회계제도 등 선진재정운용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여기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과정이 될 것이다.

새로운 지방재정제도의 조기안정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복식부회계제도와 사업예산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겪는 의문점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성과주의 예산·회계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제도개선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고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될 때 주민에 대한 재정서비스는 효과적이고 투명성있게 실현 될 것이라고 본다. 🍎

